부산광역시 사하구고시 제2019-99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(변경)인가고시

1. 부산시고시 제10호(1990.1.15.)로 최초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19호(2002.3.7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-232호(2007.6.13.)로 괴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노선분리(소로3-166 → 소로3-166, 중로3-417)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8-119호(2018.11.14.)로 최종 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(도시정비과, ☏051-220-473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8월 7일

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

가.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개요

구 분		당 초	변 경	비고
사업명칭		도시계획시설사업 (도로)	변경없음	
시 행 자		학교법인 석파학원 정학영	변경없음	
사업목적		계획도로 개설공사	변경없음	
사업위치		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220-2번지 일원	변경없음	
기반시설계획	시설별	소로3-166호선, 중로3-417호선 일부	변경없음	
	면 적	1,652㎡	변경없음	
	개 요	소로 3-166: L=179.6m B=6m 중로 3-417: L=76.4m B=6m	소로 3-166: L=172m B=6m 중로 3-417: L=84m B=6m	도로연장 오기정정
사업기간		2002.3.22.~2010.3.21.	2002.3.22.~2020.6.30.	증12개월

나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 : 생략(위장소에 비치)